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82
----------	-----

제출연월일 : 2009. 11. 2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나.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다.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시내버스 기·종점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운행하는 일반노선버스, 마을버스의 기·종점지로서 시장이 설치한 기·종점지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 등의 설치) ①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명칭·위치 및 사업구역을 대전광역시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차고지 등의 사용허가) ①시장은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와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기업인수합병·자체구조조정 등 기업구조개선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
2. 기존 차고지가 소음·공해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으로서 당해 차고지의 이전이 불가피한 운송사업자
3. 기존의 차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4. 순환버스운행, 노선조정, CNG버스 운행 등 여객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영개선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

제5조(의무)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 시내버스 기·종점지 및 이에 설치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외의 차량을 야간에 주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토지·건축 및 시설물 등을 임대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종점지 안에 설치·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영차고지등의 사용허가) ①시장은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종점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충전시설 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과 운송사업자·입주업체가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p>	<p>제4조(공영차고지 등의 사용허가) ①시장은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인수합병·자체구조조정 등 기업구조개선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 2. 기존 차고지가 소음·공해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으로서 당해 차고지의 이전이 불가피한 운송사업자 3. 기존의 차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4. 순환버스운행, 노선조정, CNG버스 운행 등 여객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영개선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
<p>제5조(사용료) ①시장은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종점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입주업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p> <p>②운송사업자 및 입주업체가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p> <p>③제1항의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④사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p> <p>⑤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p> <p>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6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p>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월 전에 운송사업자 또는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삭제></p>

관 련 법 령(발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영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3.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 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년 12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

I.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3일
3. 상 정 일 자 :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9. 12.17)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나.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다.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연정수)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준을 조례로 명시하고, 종전 조례상 공영차고지의 '사용료'와 '사용허가 취소' 등과 관련된 규정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중복되어 삭제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답변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